2022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전형료 반환신청서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4항)

|  |  |  |  |
| --- | --- | --- | --- |
| **원서 접수번호 :** | **접** | **수일자 : 2022.** | **. .** |
| **지원자** | **성** | **명** |  | **본인 연락처** |  |
| **보호자 연락처** |  |
| **생 년 월 일** |  |
| **모 집 단 위** |  | 대학(원) | 계열/학부/과 | 전공 |
| **반환 요청 사유** | □ 착오과납 | □ 대학 귀책사유 | □ 천재지변 | □ 지원자의 입원ㆍ사망 |
| **반환 계좌 정보** |
| **금융기관명** |  | **계좌주명** |  |
| **계좌번호** |  | **계좌주와의 관계** |  |
| **위 반환 요청 사유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합니다.****2022년 월 일****지원자 : (서명 또는 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

|  |  |
| --- | --- |
| **첨부서류** | 1. **반환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2. **증빙서류 ▢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 기타( )** |
| **[입학전형료 반환 안내]**「 고등교육법 」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위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청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포함)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 요청 사유를 심사하여 증빙서류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